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안 번 호 제2022-009-059호

안 건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2. 5. 25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4,5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4839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,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피심인 일반현황 >

대표	설립 일자	직원 수	매출액('20년 기준)	주요서비스

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¹⁾는 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()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1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가. 사고 경위 및 규모

피심인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()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월부 터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사실이 있다.

접속기록 분석 결과 총 명()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교직원의 경우 이름, 교번, 학과, 직급, 연락처, 이메일 항목이 유출되었고 학생의 경우 이름, 학번, 학과, 학년, 이메일, 재적상태 항목이 유출되었다.

^{1) 2020. 8. 5.} 시행된 개정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)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(제2항),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·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(제3항)

나. 사고인지 및 대응

- ㅇ ('20.6.15.) 민원인이 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제보
- * 유출 URL:
- o (**'20.6.19.**) 인터넷진흥원에서 피심인에 유출사실 알림(10:29)
 - 해당페이지에 관리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증 적용(13:00)
- o ('20.6.19. ~ 6.22.) 로그 분석을 통한 유출규모 인지
- o ('20.6.23.) 행정안전부에 유출신고 및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

2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- 1)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()에 대해 연 l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·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2)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()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.
- 3)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()에 대하여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에 접속할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4)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()에서 인터넷 홈페에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- 5)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()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6)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()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 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.

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 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가. 관련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이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,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(제1호)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(제2호), 개인정보 침해사고

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^[제4호]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.

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47호)」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

-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관리,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,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·관리하여야 한다. (제4 조제4항)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제5조제6항)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(VPN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 (제6조제2항)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제6조제3항)
-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

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 다. (제6조제5항)

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·남용,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 (제8조제2항)

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연 1회 이상으로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·관리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4조제4항), ②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5조제6항), ③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6호 제2항) ④ 개인정보처리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6호 제3항)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하지 않는 사실(고시 제6조제5항) 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6조제5항) 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8조제2항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를 위반한것이다.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따라 같은법 제75조제 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 「과태료 부과기준」에 따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기준금액 산정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 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단위: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타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 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T: All/5/2	600	1,200	2,400

나. 과태료의 가중·감경

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기준금액의 25%인 150만원을 감경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(행정안전부 기준('19.10.7.))>

유형	내용	기준
대상규모	중·소기업	감경(50%)
비오 저트	경미사항 3/10 미만 위반*	감경(50%)
410.0±	중요사항 7/10 이상 위반 [*]	가중(50%)

유형	내용	기준
위반자유형	장애/심신미약자 등	감경(50%)
	부주의등 + 피해없음	감경(50%)
	검사 전 시정/해소	감경(50%)
태도.노력	<u>의견제출 기간 시정/해소</u>	<u> 감경(25%)</u>
	은폐·조작 위반	가중(50%)
	검사 거부/미시정	가중(50%)
	피해자 10만명 이상	가중(50%)
결과	2차 피해 발생	가중(50%)
	3개월 이상	가중(50%)
기타 필요 시	기타 필요 시	감경
	기타 필요 시	가중

^{*} 과태료 5천만원(75조1항) 적용 조항은 중요사항, 1천만원(75조3항) 적용 조항은 경미사항으로 구분

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 대료) 제2항 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[※]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2년 5월 25일

위원장 윤종인 (서명)

부위원장 최 영 진 (서 명)

위 원 고성학 (서명)

위 원 백대용 (서명)

위 원 서종식 (서명)

위 원 염흥열 (서명)

위 원 이희정 (서명)

위 원 지성우 (서명)